

간디공동체 정관

제정 2002. 02. 16.
1차 개정 2003. 02. 15.
2차 개정 2004. 02. 14.
3차 개정 2018. 05. 04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이 단체는 간디공동체(이하 본회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회는 생명, 평화, 자발적 공동체라는 간디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회원, 후원인, 지역민, 학생 등 모두가 참여하여 생명, 평화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, 정신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, 자라나는 청소년과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구성) 본회는 본 정관에 동의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,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.

제4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92-3번지 내에 둔다.

제5조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- 1) 생명의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실천 활동
- 2) 평화의 의미를 일깨우는 연대 및 섬김 활동
- 3) 생명/평화의 가치를 전승하는 계절 생명, 평화학교, 주말 가족 생명, 평화학교
- 4)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의료지원 활동, 주민 유기농 먹거리 장터 등 지역 활동
- 5) 위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활동
- 6)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타지역/ 단체 간의 연대, 지원 활동

제 2장 회원

제6조 (회원의 가입 및 자격)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다.

1) 일반회원은 본회의 뜻에 찬동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며, 각종 모임 및 사업에 참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
2) 후원회원은 본회의 뜻에 동의하여 후원하는 후원인과 기타 본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사회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.
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- 1)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- 2)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3)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 개진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 단, 특별회원은 이사를 제외하고는 의견 개진권만 갖는다.
- 4) 일반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. 회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조 (탈퇴 및 징계)

- 1) 일반회원은 회비납부의 중지, 사업 참여 의지 상실 등으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의 탈퇴 신청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탈퇴할 수 있다.
- 2) 후원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3)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단, 제명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 3 장 조직

제9조 (기구)

- 1) 본회의 기구는 총회, 이사회, 대표, 각 단위원회, 각종 위원회, 감사로 이루어진다.
- 2) 각 단위원회는 대외연대회, 지역사업회, 학생회, 재정사업회, 후원회를 둔다.
- 3) 각 단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되 서로 유기적으로 의사를 소통하고 필요한 모임을 하도록 한다.
- 4) 이사회와 각 단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일상적인 본회의 운영 활동을 해 나간다.
- 5)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고문, 자문위원,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6) 본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소모임을 둘 수 있다.
- 7) 본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.

제10조 (총회)

- 1) 총회는 일반회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.
- 2)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토의, 의결한다.
 - ① 본회의 예산,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이사회의 보고 및 인준
 - ② 사업보고 및 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
 - ③ 이사와 감사, 대표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 - ④ 정관의 채택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⑤ 본 회의 해산 및 조직 전환에 관한 사항
- 3)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.
- 4) 임시총회는 일반회원 1/5 이상의 소집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가 소집한다.

- 5) 대표는 총회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에 불일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화, 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- 6)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 (총회의 의사)

- 1)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2)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및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- 3)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- 4) 제10조 2항 ⑤는 재적 구성원 2/3이상의 출석 및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 (의결 제척 사유) 회원은 아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
- 1) 회원 본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
- 2)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

제13조 (이사 및 이사회 구성)

- 1) 이사회는 각 단위회의 대표로 선출된 이사로 대외연대회, 지역사업회 각 2명, 학생회, 재정사업회, 후원회 각 1명으로 구성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.
- 2)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소집하며 총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각종 세부 운영 규정을 심의, 의결하며 제8조 2),3) 항의 결정을 행한다.
- 3)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4)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해야 하고, 임시 이사회는 필요 시 소집할 수 있다.
- 5) 이사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대표가 서면 또는 전화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, 안건은 되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 도출해 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6)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뿐 아니라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일을 계획하고 발의하며 집행할 수 있다.
- 7) 이사는 본회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성실히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8) 이사회는 각 단위회의 운영진 및 사무국장과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만나서 본회의 기본 이념인 '생명, 평화, 자발적 공동체'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.

제14조 (대표)

- 1)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의장이 된다.
- 2) 대표는 일반회원 자격 1년 이상인 회원으로서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

등록함으로써 대표 후보자가 되고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.

3) 대표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4)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5조 (각 단위회)

1) 본회는 대외연대회, 지역사업회, 학생회, 재정사업회, 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① 대외연대회는 생명, 평화 운동의 사회적 외연 확대를 위해 각종 모임, 행사, 타지역/단체와 연대, 계절/주말학교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여 모인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역사업회는 지역공동체의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 의료지원 사업, 유기농 설명회 및 유기농 장터, 생명 순환 사업 설명회등의 지역 사업을 하기로하여 모인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학생회는 계절 생명, 평화학교, 주말 가족 생명, 평화학교를 수료한 학생들로 구성한다.

④ 재정사업회는 본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하여 모인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⑤ 후원회는 본회에 대한 물질적, 정서적 지원을 하기로 한 후원인으로 구성한다. 단, 후원회 회장은 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활성화된 뒤에는 자발적으로 후원회장을 뽑도록 한다.

2) 이외의 다른 단위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에 그 구성 계획과 취지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.

3)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6조 (감사) 감사는 2인 이내로 두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1)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일을 하며, 1년에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.

2)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
3) 감사는 감사한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
4) 감사는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17조 (사무국장)

1)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에는 사무국장을 두어 일하게 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연락과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.

제4장 회계

제18조 (회계년도)

1)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19조 (재산과 회계)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) 본회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

- 2) 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금
- 3) 학교 발전을 위하여 익명을 전제로 입금된 특별기부금
- 4) 후원금, 잉여금, 기타 유상,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
제20조 (예산과 결산)

- 1) 본회의 수입,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- 2)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- 3) 본회는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제5장 보칙

제21조 (본회 해산)

- 1)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2)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.

제22조 (정관 변경)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 (규정 제정)이 정관에 정한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(2002. 02. 16.)

1. 이 정관은 본 회의 창립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
2. 정관에 의한 최초 임원(대표, 이사, 감사)의 임기는 2004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.

부칙(2003. 02. 15.)

1. 이 정관은 본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4. 02. 14.)

1. 이 정관은 본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05. 04.)

1. 이 정관은 본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